

한국수자원학회 회장선거관리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본 학회의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,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‘선관위’라 함)가 예상회장후보(이하 ‘예상후보’라고 함) 및 회장후보(이하 ‘후보’라고 함)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침의 유효기간)

본 지침은 선관위가 지침을 공표한 이후부터 선관위가 해체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.

제3조(선관위의 권한)

선관위는 예상후보 및 후보들에게 지침의 사전공지, 위반시 제재 및 처분 등과 관련된 전반의 권한을 가진다.

제4조(선거관리의 내용)

① 선관위는 예상후보 및 후보들을 대상으로 상대후보의 비방 등 적절하지 않은 선거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.

② 후보들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식적인 후보자 약력과 소견 외에는 선거권자들에게 임의로 우편발송을 금한다.

제5조(제재 및 처분의 내용)

선관위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후보의 선관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거권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.

제6조(선거운동기간)

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 익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기타)

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지침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